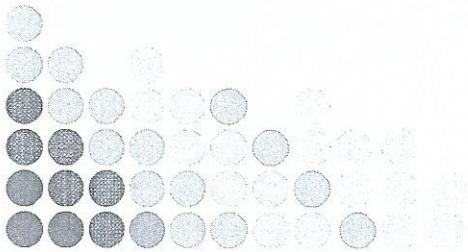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18.11.

(재가)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 우선 제공
- 1,2등급 : 재가,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등판위 인정시 시설급여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치매가족휴가제, 복지용구

● 적정급여 제공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 지원 행위 불가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구 불가

●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입소 중
- 의료기관 입원 중
- 시설급여기관 입소 중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제공 불가
- 동일 날 방문간호와 건강보험 가정간호 제공 불가

● 급여제공 절차

- 시설장 상근, 가정방문급여기관 시설장은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불가
- ※ 다만, 간호사인 시설장의 방문간호제공은 인정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가정방문급여 수기작성 : 주 1회, RFID, 주야간, 단기, 시설급여 : 월 1회
※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청 시 제공
- 제공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적 열람 가능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정방문급여기관 : 종사자 기준 가입
※ 2개 기관 종사자가 1개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타 기관 손해배상 가능 시
미가입에 대한 규정 삭제

◉ 인건비 지출비용

- 1년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인건비 : 기본급여, 제수당(시간외, 야간·휴일근무수당, 기타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 급여제공월의 다음 달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한
후 그 내역을 다음달 청구 시 제출
(예시) 1월 급여제공 → 2월 비용 청구, 인건비 지출 → 3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 인건비 지출비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구분	2017년		2018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4.3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제57조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받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86.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7.9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8.8

7

● 인건비 지출비율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사회복지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받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가산인정 인원 수

수급자 수	장기요양요원 인정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8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 2017.6.1~12.31까지 급여제공 내역 있는 기관
☞ 2017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 2018.1.1~12.31까지 급여제공 내역 있는 기관
☞ 2018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 2017.6.1~2018.12.31까지 급여제공 내역 있는 기관
☞ 2017년 비율 및 2018년 비율을 가중 평균한 비율 준수

<가중 평균 비율>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건비 비율(%)	85.6	49.1	58.5

● 인건비 지출비율(재가급여)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포함항목	제외항목
방문요양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제20조 급여비용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18.1월~)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방문목욕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11조제3항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
방문간호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제20조 급여비용 가산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 장기근속 장려금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일정기간 :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연속 근무(방문형은 월 60시간 이상)

※ 동일기관 : 기관기호가 동일한 하나의 기관에서 근무

— 대상 종사자

제11조의4	급여유형	직종	금액
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5만 원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 6만 원 • 84개월 이상 : 7만 원
제1항제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등 업무 수행)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제1항제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직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4만 원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 5만 원 • 84개월 이상 : 6만 원

※ 대표자는 산정 불가

11

● 장기근속 장려금

—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12개월) : 장려금은 미지급
- 동일대표자의 타 기관 근무기간
- 급여유형 변경으로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 장기요양기관이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로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근무기간 연계

- 퇴사, 휴직 후 3개월 내 동일기관 재취업, 복직한 경우(2018년부터 재가형도 동일 적용)
- 육아휴직 3년(18.7.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120시간(방문형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12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13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제공기준

–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

- 수급자 가정 방문하여 제공(병원동행, 장보기 등 예외적용)
- 1인 전적제공(동일가정 거주 가족관계인 수급자 2명 이상인 경우 동시제공 가능)

–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불가

-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방문간호 중복 가능
- ☞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 이용한 재가급여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재가급여 제공기준

- 가족요양보호사(방문요양 · 방문목욕)
 - 가족관계 공단신고(법률적 가족관계)
 - 월 1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족요양 제한(가족요양 서비스 시간 제외)
 - 1회 60분, 월 20일, 가족요양 제공하는 날 다른 방문요양비용 산정 불가
- ※ 치매로 문제행동 있거나, 65세 이상 배우자가 제공시 1회 90분, 20일 초과 가능

15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사례>

1. 의료기관 입원 중 외출하여 의료기관앞에 대기중인 방문목욕 차량에서 목욕 제공
2. 보호자가 수급자를 병원에 모셔드리고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만나 진료도움을 준 후 수급자 가정에 모셔다 드린 경우
3. 수급자를 모시고 병원동행한 후 수급자 진료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개인 볼일을 보고 진료가 끝난후 다시 수급자 가정으로 모셔다 드린 경우
4. 수급자가 병원에서 혈액투석받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병원에 와서 수발도움을 주고 병원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16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사례>

5. 동일가정에 3등급 부부수급자(A,B)에게 오전 9시~오후5시까지 방문요양 제공하고
비용 산정은 A는 09~12시, 15~16시, B는 12~15시, 16~17시 산정가능 여부
6. 요양보호사가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 90분 가족요양을 제공하다가 등급 갱신에 의해 60분 가족요양으로 바뀐 경우 가족
요양 제공일수

17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

- 가사지원 1회 120분 범위내, 정서지원 1회 60분 범위내
- 1회 180분, 1일 3회 제공가능(2시간 방문간격)
 - ※ 2시간 미만인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 합산
- 1회 210분 또는 240분 : 1등급, 2등급 1일 1회만 가능
 - ※ 동 급여비용 산정하는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불가
- 270분 이상 연속서비스 월 4회
 - ※ 480분이상 제공(240분+240분수가), 470분 제공(240분수가+180분수가)
- 급여제공 시간별 가산: 18:00~22:00(20%), 22:00~06:00, 공휴가산(30%) 가능
- 2인제공 : 수급자 등의 신체, 정신상태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가능
 - ※ 비용산정 : 1인은 90분까지, 1인은 급여제공시간 만큼 산정

18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

- 원거리교통비 적용 : 방문요양, 방문간호, 24시간 방문요양
- (대상)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합계 7점이상, 가족요양비지급 섬, 벽지지역 거주자
- (산정기준)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기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 (금액) 편도 거리 기준 3,400원~ 13,600원 지급(수급자 부담 없음) - 1회 방문비용임
- (산정불가) 가족요양,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간의 거리가 5km 미만, 수급자와 수급자 사이의 거리가 5km 미만인 경우

19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사례>

1.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 방문하여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까지 동행하고 병원에서 서비스 종료후 2시간 이후에 투석이 끝나는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으로 방문해 수급자를 가정으로 모시고 간 경우 1일 2회 산정가능여부
2. 1등급 수급자에게 09~12시, 13~15시, 17~19시까지 1일 3회 제공한 경우 비용산정 방법
3. 4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0~12시, 15~17시 제공한 경우 비용 산정방법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이상, 60분 이상 제공
 - ※ 40~60분 미만 제공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주1회산정 : 변실금, 요실금 등으로 피부건강 유지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는 반드시 2인 이상 요양보호사 제공
 - ※ 2인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일체 산정불가

21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
- 18:00~22:00, 22:00~06:00, 공휴일 가산
- 5등급 수급자에게는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
- 간호사 가산(관리책임자 제외) : 1회 3천원
- 간호조무사 가산 : 치매교육 이수후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 시 1회 1,500원
- 예방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월 1회, 월한도액 제외)
 - ※ 대상 : 인정조사표 상 간호처치 영역 한 개 이상 체크된 1~4등급자
- 최초 등급받은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4회 무료제공('18.7.1~)
 -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월 2회까지 총4회(월한도액 제외)
 - 최초 1회는 60분 미만수가, 3회는 30분 미만수가
 -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

22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대상)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있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조건) 치매교육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배치
 - 프로그램관리자 직종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방문요양기관 : 프로그램관리자 + 치매전문요양보호사
 - 주 · 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
- (급여종류)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5등급 필수, 1~4등급 선택
 - (주 · 야간보호) 1~4등급 선택, 5등급·인지지원등급 필수
- (가산금)
 - 프로그램관리자가산금(시설장 제외) :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
 - 요양보호사 가산금(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해당) : 1회 5,760원

23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가산금 산정 요건
 - 프로그램관리자 : 매월 급여제공 계획 수립, 요양보호사의 적정급여제공 내역 확인
 - 방문요양기관 : 월 2회 가정방문, 1회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시간 중 방문
 - 주 · 야간보호기관 : 주3회(월12회), 1회 60분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 정원 20인 이하 기관이면서 시설장 겸직이 아닌 시설장이 프로그램 관리자인 경우 가산 지급
- 5등급 수급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 1회 2시간 이상 3시간까지
 - 인지자극활동(1시간) + 일상생활함께하기(2시간)

※ 1일 8시간 이상 주 · 야간보호 이용시 급여제공 전후로 1회 120분까지 방문요양 이용 가능

24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사례>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전 이동도움등을 위해 일반방문요양 1시간 이용하고 주·야간보호 이용도중 아파서 병원진료로 인해 8시간 미만 서비스 받은 경우 일반 방문요양 인정여부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병원동행 가능여부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시설장이 월 2회 방문(1회는 급여 제공시간 중 방문)한 경우 이를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5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단기보호

- 월 9일, 연간 4회 연장가능(1회 9일), 연장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초과 인정
 - ※ '17.12.31.이전 지정받은 경우 월 15일, 연간 2회(1회 15일 범위내) 연장 가능(2020.12.31.까지)
- 입 · 퇴소 당일 12시간 미만시 수가의 50% 산정
- 동일월 단기보호와 시설급여 복합이용 규정
- ☞ 병설기관에 한해 하나의 급여비용만 인정

26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치매가족휴가제 : 가족의 휴식 지원
 - (대상) 의사소견서 상 치매상병,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있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동일월에 시설급여, 단기보호 이용한적 없는 경우(18.7.1 삭제)
 - (급여종류) 단기보호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4시간 방문요양 : 1, 2등급
 - (이용일수) 연간 6일(월 한도액 제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적용

27

2.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 치매가족휴가제 : 가족의 휴식 지원
 - 24시간 방문요양 제공기관
 - ☞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1개 이상 복합운영기관
(이용기간 중 간호인력 방문)
 -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 ☞ 기본수가의 15% 본인부담, 가산금은 수급자 부담없음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시 : 급여비용의 80% 산정

28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29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가산 및 감액 산정 일반원칙

— 인력배치기준

-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배치(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계산결과 0.5명 미만인 경우 기본 1명 배치

— 월 기준 근무시간

- 근무인원 1인 = 근무가능일수(토,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 8시간
- 월 중 사업개시, 휴 · 폐업
- ☞ 해당월 사업운영기간(토,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 8시간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가산 및 감액 산정 일반원칙

－ 근무인원

- 지자체 신고 인력 중 해당 기관에서 신고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 월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 근무시간 합산/월기준근무시간

※ 가산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감액산정(소수점 첫째자리가 4이하인 경우 절사, 5이상인 경우 둘째자리 절사)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가산 및 감액 산정 일반원칙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① 연차휴가, 병가(연30일), 국가건강검진, 경·조사 휴가
 - ② 출산휴가(최초 60일)
- ① ~ ② :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 인정
- ③ 유급인 경우 수유시간, 임신부 근로 단축시간(1일2시간)
 - ④ 교육시간(1일 8시간 내 실제 소요된 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의무교육시간 및 평가지표관련 교육시간 인정
 - 공단 및 지자체 교육은 모두 인정(치매전문교육시간 포함)
 - 협회 등 외부기관 교육은 연간 16시간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가산유형) 인력추가배치, 간호사배치, 야간직원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 인력추가배치 가산시 인력배치기준 준수
 - 겸직인 직원, 출산휴가중인 직원은 가산적용 근무인원에 미포함
- 기본 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인정 비교

구분	인력추가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야간직원 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가산
법정 인력배치 기준위반	X	O	O	O
정원초과 감액	X	X	X	X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감액	O	O	O	O

33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기준금액 × (가산점수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기준금액 : (재가) 급여비용 합의 85%

* 서비스유형점수 : (방문요양) 1.8점

34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방문요양 수급자수 15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의무배치(가산점수 : 1.8점)

• 사회복지사(1.2점), 팀장급요양보호사(1점), 간호(조무)사(1점) 추가배치 가능

※ 팀장급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인자(월 60시간 이상 60개월)

• 사회복지사 등 가산인정 인원수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4명

* 수급자수: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 수

35

3.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가산 급여종류 선택 가능(방문요양 필수, 목욕, 간호는 선택)

☞ 가산금액은 선택한 급여종류의 비용

방문비용은 선택한 급여종류의 수급자수로 계산

• 가정방문비용에 따라 가산점수 차등 적용

* 100% 방문 ☞ 가산점수의 100% 산정

90%이상 방문 ☞ 가산점수의 80% 산정

80%이상 방문 ☞ 가산점수의 50% 산정

36

◦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구분	방문요양기관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간호)
가 산 산 정 원 칙	인력 배치	· 방문요양 수급자 15명 이상 － 사회복지사 1명 의무배치 → 가산적용 · 방문요양 수급자 30명 이상 －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 가산적용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 → 추가배치 가산적용
	가산 점수	사회복지사 1.2점(의무배치1명 1.8점) / 간호(조무)사 1점 / 팀장급 요양보호사* 1점
	가산 인원수	1명(수급자 수 15~30명미만) 2명(수급자 수 30~60명) 3명(수급자 수 60~90명) 4명(수급자 수 90명 이상)
	업무	(공통) 매월 1회이상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 중 수급자 가정방문, 급여계획수립, 적정서비스 제공 확인, 18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제공으로 급여제공시간 이외 방문시 수급자, 급여제공자 모두 면담 (의무배치) 30명이상인 기관이 1명만 배치한 경우 월 30명 이상 수급자 가정방문(3개월내 모든수급자 방문)

37

◦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 팀장급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방문요양, 방문간호 제공하더라도 비용불인정
- 팀장급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제공시 방문목욕비용의 50% 인정
- 가산금액 산정시 24시간 방문요양 이용금액 제외

38

◦ 급여비용 감액 산정기준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 가정방문급여 : 종사자가 가입하지 않은 해당일 급여비용의 90% 산정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 종사자가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 제공시
-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 신규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로 당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노후삶의질향상을위한
품격높은장기요양보험

감사합니다!

